

▣ 제 1 주 제

심의사례로 본 2022 선거보도 평가

윤 여 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진단, 2022 선거보도

심의사례로 본 2022 선거보도 평가

2022년 10월 28일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선거와 언론보도, 선거기사심의제도

- 선거와 언론보도

-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정치 이벤트는 선거(選舉)
- 선거는 언론이 다루는 가장 큰 사건이자, 언론의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행사
- 선거보도를 통해 언론의 저널리즘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함.

- 선거보도 심의제도

- 선거보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유권자들의 민주적 선출과정에 기여
- 선거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심의해야 함.
- 민주적 제도로서 선거보도의 공정성, 형평성, 불편부당함이 유지되도록 심의제도 마련

2022년 선거보도의 성격

- 제20대 대통령 선거
 - 양당 유력후보의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됨.
 -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특정후보 우열을 단정짓는 보도가 많았음.
 - 후보 도덕성, 후보가족 도덕성 검증 중심 폭로와 네거티브 보도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대통령선거 3개월 만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면서, 대통령선거의 영향으로 역대 두번째 낮은 투표률로 진행됨.
 - 특정 후보의 논평, 성명,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홍보효과 유발 사례가 많음.
 - 출마예정인 현직 단체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도 다수 발견됨.

공직선거법

1.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2. 1. 17.>

2.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 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3.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5. 8. 4., 2009. 7. 31.>

4. 제8조의 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5. 제8조의 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발족 및 운영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3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기사 (사설, 논평,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 공정성 여부를 심의함.

1. 운영기간 : 2021년 7월11일 ~ 4월8일 (선거일 3월9일)
2022년 1월31일 ~ 7월1일 (선거일 6월1일)
2. 구성 : 공직선거법 제8조3 제2항에 따라 정당 및 중앙선거관리위추천 각1명,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추천 등 총 9명으로 구성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발족 및 운영

3. 기능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 한 후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 의결함.

<제재조치 관련규정 >

제재조치	관련법률	관련규칙
정정보도문 게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반론보도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	
경고월정문 게재	동법 제8조의3제3항	
주의사실 게재	"	
경고	"	
주의	"	
광고	"	

20대 대통령선거 심의결과 - 총87건 심의

중앙일간지29개, 지역일간지134개, 기타일간지5개, 종합주간지34개, 지역주간지211개, 월간지 22개, 뉴스통신12개 등 총 447개 매체의 선거관련 기사, 사설, 논평, 광고 등을 검토하여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기사를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자체심의

간별	계 (%)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합당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민(의뢰)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용 승부
일간	중앙	18	7	11	1	9	1			7		1	3	14		
	지역	43	20	23	7	23		1	10	2		3	11	26	2	1
주간	종합	3	2	1	1	1			1			1	2			
	지역	3	2	1	1	1			1			2	1			
월간지	0															
뉴스통신	6		6		6								6			
계 (%)	73 (100.0)	31 (42.5)	42 (57.5)	0 (0.0)	10 (13.7)	40 (54.8)	1 (1.4)	1 (1.4)	12 (16.4)	9 (12.3)	0 (0.0)	4 (5.5)	17 (23.3)	49 (67.1)	2 (2.7)	1 (1.4)

■ 시정요구심의

간별	계 (%)	결정내용										
		장정 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취하	기각		
일간지	중앙	12					3	2				7
	지역	0										
주간지	종합	0										
	지역	0										
월간지	0											
뉴스통신	0											
계 (%)	12 (100.0)	0 (0.0)	0 (0.0)	0 (0.0)	0 (0.0)	3 (25.0)	2 (16.7)	0 (0.0)	0 (0.0)	0 (0.0)	7 (58.3)	

■ 재심청구 의결현황

의결번호	원심결정	결과
제20대 대선-재심1	제20대 대선-시심11 (주의사실 게재)	일부 인동 (주의사실 게재 → 경고)
제20대 대선-재심2	제20대 대선-자심60 (주의사실 게재)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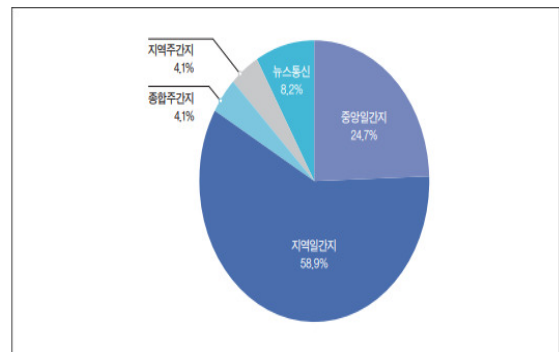
<위반유형 >

- 공정성 및 형평성 (42.5%)
 -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칼럼 및 기고문 게재 (12건)
 - 특정후보 관련 홍보물 게재 사례 (8건)
 - 광고 제한기준 위반 사례 (9건)
 - 보도량 불균형 사례 (1건)
- 객관성 및 사실보도 (57.5%)
 - 여론조사보도 기준 위반사례(40건)
 - 후보자 비교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입증 내용 누락(1건)
 - 선거쟁점 인터뷰 불균형 (1건)

<보도유형 >

- 여론조사보도 (54.8%)
- 칼럼 및 기고 (16.4%)
- 일반보도 (13.7%)
- 광고제한 (12.3%)

<매체유형별 자체심의 의결현황>



결정내용

3. 주의(총49건)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 여론조사기준위반 (38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 특정후보유불리한 칼럼게재(3건)
- 광고제한기준위반 (3건)
- 보도량 불균형 (1건)
- 특정후보 홍보물 게재(1건)
- 특정후보 유불리한 만평(1건)

중앙지 - 14개
지역지 - 26개
뉴스통신 - 6개

시정요구심의의

경고 - 2건, 주의 - 3건, 기각 - 7건

〈조선일보 2021년 10월 6일자 4면〉

〈중앙일보 2021년 9월 30일자 4면〉

시정요구 신청인 - 이재명
심의결과 - 기각

시정요구 신청인 - 이재명
심의결과 - 경고 (객관성 위반)

시정요구 재심청구 의결 - 주의사실게재 취소, 경고로 의결



<동아일보 2021년 10월 14일자 1면>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 본보는 10월 14일자 1면 「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기사의 제목과 본문 사이에 이 기사와 관련 없는 이재명 후보자의 사진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의 배치는 독자들로부터 하여금 하나의 기사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유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연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 및 제10조(사진 게재) 위반]

의결번호	제20대 대선-재심1 (원결정 제20대 대선-사심11)
재심청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동아일보)
재심청구대상	동아일보 2021년 10월 14일자 1면 1. 「박영수, 인척 회사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 제하의 기사 (제1기사) 2. 「대장동 국감 앞둔 이재명, 쏟아진 질문 세례」, 제하의 사진기사 (제2기사)
주 문	1. 우리 위원회의 제20대 대선-사심11 결정에 따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서 대한 주의사실 게재 명령을 취소한다. 2. 위 재심청구대상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 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총 71건 심의

중앙일간지29개, 지역일간지134개, 기타일간지5개, 종합주간지34개, 지역주간지206개, 월간지 22개, 뉴스통신12개 등 총 442개 매체의 선거관련 기사, 사실, 논평, 광고 등을 검토하여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기사를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간별	계 (%)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이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건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언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관고	안내 문 송부
일간	2	1	1		1			1					2			
지역	30	24	6		15	6		4	5	2	3	8	16	1		
종합	1	1				1							1			
주간	27	24	3		16	3	1	3	4	1	2	3	20	1		
월간지	0															
뉴스통신	5	3	2		2	2	1	1	8	10	3	7	14	39		
총계 (%)	85	53	12	0	33	12	1	1	8	10	3	7	14	39		
	(100.0)	(81.5)	(16.5)	(0.0)	(60.8)	(18.9)	(1.5)	(1.5)	(12.3)	(15.4)	(4.6)	(10.8)	(21.5)	(60.0)		

■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간별	계 (%)	결정내용								
		정정보도문 게재	반본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관고	취하	기각
지역일간지	1					1				
지역주간지	2		2							
총계 (%)	3	0	2	0	0	1	0	0	0	0
	(100.0)	(0.0)	(66.7)	(0.0)	(0.0)	(33.3)	(0.0)	(0.0)	(0.0)	(0.0)

■ 재심청구 의결현황

의결번호	재심청구인	기사제목	원심 결정	결과
제8회 지선-재심1	연천신문	연천 서희정교의원 "우리 김정은 위원장" 발언 논란 재검토	제8회 지선-사심1 (반본보도문 게재)	기각
제8회 지선-재심2	주식회사 현지일보	삼남·소통·공감... '김태훈의 부활'기, 외 1건	제8회 지선-재심9 (주의)	기각
제8회 지선-재심3	주식회사 창생신문	한정우 창녕교수, "특정인 공천주려고 뇌물 줬으면 함 것" 외 7건	제8회 지선-재심62 (주의사실 게재)	기각

<위반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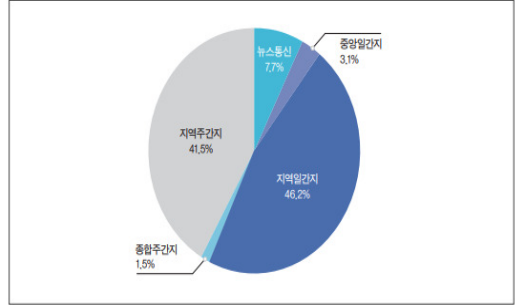
- 공정성 및 형평성 (81.5%)
-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칼럼 및 기고문 게재 (21건)
 - 특정후보 부각사례 (12건)
 - 광고 제한기준 위반 사례 (10건)
 - 특정후보 유불리한 칼럼기고문 (4건)
 - 보도량 불균형 사례 (5건)

- 객관성 및 사실보도 (12%)
- 여론조사보도 기준 위반사례(12건)

- <보도유형 >
- 일반선거기사 (50.8%)
 - 여론조사보도(18.5%)
 - 광고제한 (15.4%)
 - 칼럼 및 기고 (12.3%)

<매체유형별 자체심의 의결현황>

■ 매체유형별 자체심의 의결현황



결정내용

1. 경고결정문게재 -3건 (공정성 위반)

- 특정후보자 홍보물 게재 2건
- 후보자 간 보도량 불균형 사례 -1건



<전남도민일보 2022년 4월 12일자 1면>

[별지] 경고결정문

1. 제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2. 본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전남도민일보 4월 12일자 1면 「이재명의 사람」 김명선 상임대표, 이용섭 예비후보 지지선언,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전남도민일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전문을 1면 상단에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전남도민일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경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전남도민일보 4월 12일자 1면 「이재명의 사람」 김명선 상임대표, 이용섭 예비후보 지지선언,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전남도민일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 출마하는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전문을 1면 상단에 부각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 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전남도민일보 2022년 5월 5일자 1면>

결정내용

경고결정문 게재

- 공정보도의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고령신문 2022년 3월 21일자 1면>

[별지] 경고결정문

1. 제목: 선거사심의위원회 경고
2. 본문: 선거사심의위원회는 고령신문 3월 21일자 1면 「희망이 넘치는 '일등 고령군'을 만들겠습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고령신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보도함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여타 후보자에 대한 보도와 다른 제목 크기, 편집 등을 사용해 차별화하고, 1면 상단에 출마선언문 전문을 부각 보도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제3항) 및 선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선거사심의위원회 경고

선거사심의위원회는 고령신문 3월 21일자 1면 「희망이 넘치는 '일등 고령군'을 만들겠습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고령신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을 보도함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여타 후보자에 대한 보도와 다른 제목 크기, 편집 등을 사용해 차별화하고, 1면 상단에 출마선언문 전문을 부각 보도함으로써 해당 후보자 및 여타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및 선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및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및 선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고령신문 2022년 3월 21일자 1면>

결정내용

2.주의사실게재 - 7건

- 공정보도의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 후보간 보도량 불균형 -4건
- 특정 후보자 부각 -2건
- 특정 후보자 부정적 보도 -1건

[별지] 주의사실 게재 결정문

1. 제목: 선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2. 본문: 본 뉴스통신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공약을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여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홍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기사(3월 24일자 전국면 「한옥문 양산시장 후보 내놓는 공약마다 '눈길'」)을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형평성)제1항제1호, 제7조(일반 선거기사)제2호 및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선거사심의위원회 주의의 결정사항을 알립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저작권 ©KNS뉴스통신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KNS뉴스통신 2022년 4월 25일자>

KNS 뉴스통신

한옥문 양산시장 후보 내놓는 공약마다 '눈길'

양산시장후보 **국면전환** 양산시장후보 **국면전환**

#1 여유로운 30분 양산
 양산 어디에서 출발해도 어디로 가든 30분이면 여유롭게 닿을 수 있도록 양산의 교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바꾸겠습니다

#2 지속 성장도시 양산
 양산의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할 새로운 미래역동성을 구축적으로 발굴, 유지하겠습니다

희든 프로젝트와 일상감각으로 시민 관심 상승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한옥문 양산시장 예비후보자가 내놓는 공약마다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옥문 후보는 지난 21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후 매일 오전 '한옥문의 희든 프로젝트'와 '시민이 행복할 한옥문의 일상감각'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한옥문의 희든 프로젝트는 희망의 양산, 든든한 시민이라는 내용을 함축한 것으로 양산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한옥문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또 '시민이 행복할 한옥문의 일상감각'은 양산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을 정적으로 보완하거나 새롭게 지원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처음 시민들에게 공개한 희든 프로젝트 그 첫 번째 공약은 '여유로운 30분 양산'이라는 주제로 양산의 교통 인프라를 대개조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산의 국지도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국지도1028호선(홍삼-삼북)과 1022호선(불암-원동) 사업과 홍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도시철도 개통 사업 추진이다.

또한 동면에서 삼북으로 이어지는 국도35호선 개통까지 양산의 교통체계의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정요구심의

반론보도문게재 - 2건, 경고 - 1건



시정요구인 - 서희정
심의결과 - 반론보도문 게재

[별지] 반론보도문

1. 제목 : [반론보도문] 연천군 서희정 의원 기사 관련

2. 본문 : 본지는 2022년 2월 28일~3월 10일자(제455호)에 『연천 서희정의원원 "우리 김정은 위원장" 발언 논란 재점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희정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 선수단 참가, 3월에는 판문점 고위급 정상회담내용 공동보도문 채택하고, 4.27 남북정상선언을 6일 앞둔 시점 등의 분위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 민족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을 칭찬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으로, 해당 표현이 북한을 추종하거나 친북 성향이기 때문에 쓴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피시정인(연천신문) 재심청구
심의결과 - 재심청구 기각

[반론보도문] 연천군 서희정 의원 기사 관련

본지는 2022년 2월 28일~3월 10일자(제455호)에 『연천 서희정의원원 "우리 김정은 위원장" 발언 논란 재점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희정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 선수단 참가, 3월에는 판문점 고위급 정상회담내용 공동보도문 채택하고, 4.27 남북정상선언을 6일 앞둔 시점 등의 분위기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우리 민족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을 칭찬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으로, 해당 표현이 북한을 추종하거나 친북 성향이기 때문에 쓴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연천신문 2022년 4월 6일자 2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2022년)

○ 조치내역

2022년 6월 1일 기준

선거명	계	정정보도	반론보도	경고문게재	경고	주의	공정보도 협조요청	기각
계	596	1	1	12	21	47	440	74
제20대 대통령선거	376	0	0	7	15	37	260	5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17	1	1	5	5	10	179	16
2022년 재보궐선거 (3. 9. 실시)	2				1			1
2022년 재보궐선거 (6. 1. 실시)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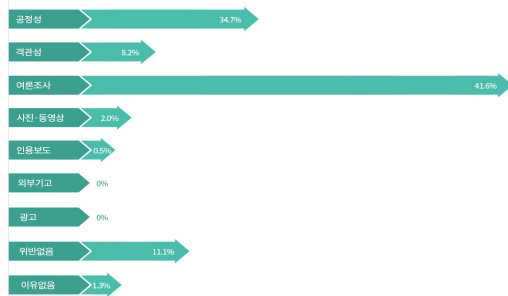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2022년)

○ 위반유형별 조치내역

2022년 6월 1일 기준

선거명	계	공정성	객관성	여론 조사	인용 보도	사진·동영상	외부 기고	광고	위반없음	이유없음
계	596	207	52	248	12	3	0	0	66	8
제20대 대통령선거	376	80	31	195	11	2	0	0	53	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17	127	20	52	1	1			13	3
2022년 재보궐선거 (3. 9. 실시)	2		1							1
2022년 재보궐선거 (6. 1. 실시)	1			1						

○ 위반유형별 조치내역 비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20대 대통령 선거)

< 심의·의결 현황 >

제재 구분	매체	지상파	중편/보도PP	일반PP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경고	1		1
	주의	1		
행정지도	권고	27(1)	19	4
	의견제시	40	30	
	문제없음	45	60(1)	2
	기타결정(각하)	1		
	소 계	115(1)	109(1)	7
	총 계		231(2)	

※ ()는 재보궐선거 심의내역

< 제재사유별 현황 >

구분	의결현황
객관성	50(1)
시사정보프로그램	46
여론조사의 보도	28
공정성	11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4
균등한 기회 부여	3
정치적 중립	1
연예오락프로그램	1
「방송심의회 관한 규정」제19조(사생활보호), 제21조(인권보호)	1
총 계	145(1)

※ 1. 단일 안건의 중복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전체 심의건수와 자이가 있음
2. ()는 재보궐선거 심의내역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심의·의결 현황 >

제재 구분	매체	지상파	종편/보도PP	일반PP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1	0(3)	
행정지도	권고	11	1	
	의견제시	9(3)	1(4)	1
	문제없음	32(1)	3(3)	1
	소 계	53(4)	5(10)	2
	총 계	60(14)		

※ ()는 재·보궐선거 심의내역

< 제재사유별 현황 >

구분	의결현황
여론조사의 보도	10(2)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7(0)
객관성	5(2)
시사정보프로그램	1(5)
사실보도	0(2)
공정성	0(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2(0)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2(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 토크프로그램 등)	1(0)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동위유지)	1(0)
총 계	29(13)

※ 1. 단일 안건의 중복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전체 심의건수와 차이가 있음
2. ()는 재·보궐선거 심의내역

선거보도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

1. 여론조사보도, 빅데이터 분석결과 보도
 - 여론조사 등 통계를 근거로 신뢰성 담보하려는 보도에서의 여론조사의 범위, 방법 등을 과학적 방법론을 근거로 전달해야 함.
 - 빅데이터분석 등을 통해 여론의 추이를 보도하는 경우에도 근거와 방법 등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함.
2. 의견광고 게재의 문제
 - 광고를 통해 개인 및 집단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나, 상대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발생할 수 경우, 반론을 할 수 없음.

선거기사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 선거기사심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수단 마련

- 언론사가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얻는 이득에 비해 선거기사심의 위원회가 내리는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
- 다양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제도 도입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포털뉴스 진입 시 평가에 반영토록 함.
- 언론사 스스로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선거기사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2. 선거기사심의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

- 선거보도를 통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촉박한 선거기간내 피해구제효과가 크지 않아 시정요구를 포기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와 언론사 모두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선거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함.
- 반복적인 단순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계도 필요
- 언론사를 상대로 심의기준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선거기사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3. 데이터베이스 활동을 통해 심의기준 위반 사례 유형화

- 매번 새롭게 구성되는 심의위원회, 심의노하우 전승필요
- 지난 15년간 약 1천5백 건의 심의사례 유형화
- 심의기준 구체화를 통한 모니터링 활성화
- 이를 통해 심의의 객관성 확보
- 언론사의 자율적으로 선거기사를 사전점검하는 시스템으로 발전

선거기사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4. 여타 심의기관과 일관된 심의제도 확립필요

- 디지털 미디어환경에서 선거기사 및 선거방송보다 인터넷매체를 통해 후보에 대한 정보와 정책을 전달받고 있음.
- 현재 심의제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선거기사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 등 플랫폼을 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규제 뿐 아니라 서로 상이한 판단을 내려지기도 함.
-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을 위해 선거기사 및 보도의 심의 기구가 유기적 협력을 넘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변화하는 환경에서 대비해야 할 제도

1. 심의규제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문제

- 뉴미디어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의 양상이 달라져 기존의 제도와 충돌
- 저널리즘의 성격을 표방하는 유튜브 매체를 표현의 자유 영역의 사적 매체로 둘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자유 영역의 공적 매체로 둘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
- 선거 90일 전 보도 및 출연금지 무력화
- 현행 공직선거법상 유사 언론의 조건 및 자격도 구체화 필요

감사합니다

